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54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서영교 · 민병덕 · 조계원
임미애 · 박홍배 · 김문수
박희승 · 이성윤 · 이해식
임오경 · 박지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 1명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의료지원 선순위자에 관한 협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전단 중 “나이가 많은”을 “생활수준이 낮은”으로,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을 “생활수준의 산정 방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7항제3호 후단 중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을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이 지정되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순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던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생략)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u>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u> 이 경우 <u>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 <u>생활수준이 낮은</u> ----- - <u>지급한다.</u> ----- <u>생활수준의 산정방식</u> ----- -----.
<u><신 설></u>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u>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u> 이 경우 <u>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u> 등에

③ · ④ (생략)

제42조(진료)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 2. (생략)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
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
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
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
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4. (생략)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진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제13조 제2항 제4
호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이 지
정되지 아니한-----

4.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